#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 발의연월일: 2024. 6. 4.

발 의 자: 박해철 · 송옥주 · 이수진

박선원 · 김영배 · 박희승

강선우・서영교・김태선

김정호 • 윤종군 • 김주영

박홍배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매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.

최저임금위원회의 이와 같은 심의 및 의결 권한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인데,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여,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,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의2 신설)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(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).
- 나.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함(안 제17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위원회 회의록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- 1. 개의,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
- 2. 의사일정
- 3.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
- 4. 출석위원의 발언
- 5. 표결 수
- 6.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.
- ③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·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회의록의 작성·보존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최저임금의 결정) ① (생	제8조(최저임금의 결정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	2
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	
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	
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	
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	
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	
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	
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
	금안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여
	<u>야 한다.</u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17조의2(위원회 회의록) ① 위
	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	적은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
	<u>야 한다.</u>
	1. 개의, 회의 중지 및 산회의
	<u>일시</u>
	<u>2. 의사일정</u>
	3.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
	4. 출석위원의 발언

# 5. 표결 수

- 6.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.
- ③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·보 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.